【등록(거소신고)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(연장) 안내문】

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**등록(거소신고)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**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**해 주시고,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**온라인 전자민원(www.hikorea.go.kr)을 적극 이용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 대상자

- ❶ '20. 4. 9. ~ '20. 5. 31.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**등록(거소) 외국인으로서,** ❷ **시행일(4. 9.)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**

〈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〉

-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소재불명자
- 시행일(4. 9.) 당시 해외출국자
-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
- 건강보험·조세 체납자
-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(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)이나 출국기한의 유예(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)를 받은 사람

2 연장처리 방안

-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**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**됩니다.

〈 예외적 처리 대상 〉

□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법령·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까지 연장 처리

- 호텔 · 유흥업 종사자(E-6-2) 체류 상한 →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
-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(F-1-5) 체류 상한 →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
- 방문취업(H-2) 및 그 동반가족(F-1-11) 체류 상한 →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

3 유의사항

-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,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**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신고증)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4 조치결과 확인 (4. 10.(금)부터 조회 가능)

- 조치 결과는 **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자주찾는 서비스 〉 체류기간 확인** 에서 여권번호,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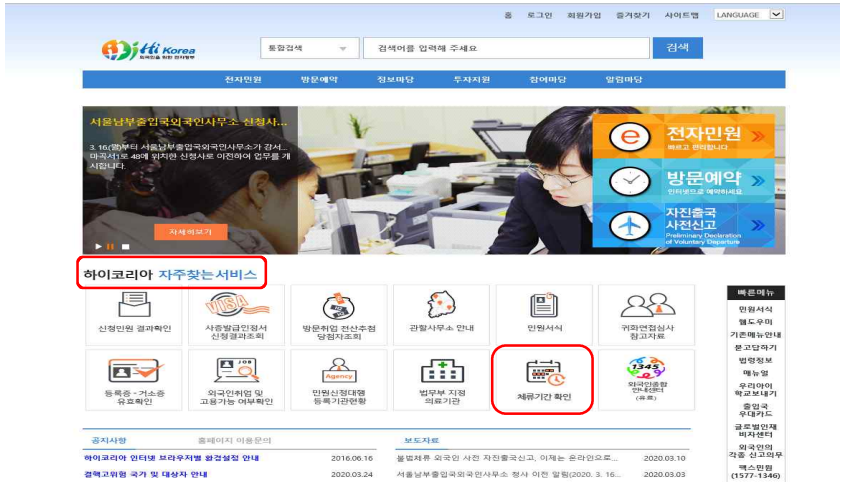
〈화면 예시〉